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주식회사 발켄모빌리티 소유물건(2025타경 55091)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주현

감정서번호 : GD13-250925-30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지역본부

TEL. 02-6299-7444

FAX. 0505-182-4448

(자동차)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최미경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장 노태중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천만원정 (₩20,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주현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발켄모빌리티 (2025타경55091)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0.16	2025.10.16 ~2025.10.16	2025.10.1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	20,000,000
	합계					₩20,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95-50 "우리물류"에 보관중인 자동차(차명: 봉고Ⅲ 1톤 EV, 등록번호: 82라8926)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자동차 경매(2025타경55091)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16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 조건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 조건 검토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자동차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동종 및 유사물건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규격, 형식, 현상, 관리 및 운행상태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한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차종,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기준시점 현재 정상시동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서류와 외관 및 내부관찰,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정상작동 및 정상운행 여부, 수리필요 부분 등은 경매진행 및 입찰 참여시 재확인 바랍니다.

다. 자동차 등록원부(갑) 상 일련번호2 검사유효기간은 2024-08-19 ~ 2026-08-18 인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본건 자동차의 사고유무 등의 구체적인 상태는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상 사고이력 내역을 참고 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보험사고이력	
2	자동차 특수 용도 이력	없음.
	자동차 번호 / 소유자 변경이력	0회 / 0회
	자동차 특수 사고이력 (전손, 도난, 침수)	없음.
	보험사고이력: 내차피해	0회 (0원)
	보험사고이력: 상대차피해	1회 (802,774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일련번호 2

차명	봉고Ⅲ 1톤 EV		
자동차 등록번호	82라8926	용도	자가용
색상	흰색	차종	화물 소형
차대번호	KNCSJZ7NFMK012074	원동기형식	EM14
연식 (모델연도)	2021	출처구분	신조차
최초등록일	2021-08-19	제작연월일	2021-08-10
주행거리 (등록원부)	40,872 km	주행거리 (계기판)	47,167 km
검사유효기간 (등록원부)	2024-08-19 ~ 2026-08-18		
보관장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95-50 우리물류		



본건 정면



본건 측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1. 유사 차량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차명	연식	배기량 (cc)	주행거리 (km)	평가금액 (원)	평가목적	비고
						기준시점	
ㄱ	봉고Ⅲ 1톤 EV	2020	180	69,549	17,000,000	법원경매	-
						2025.07.10	
ㄴ	봉고Ⅲ 1톤 EV	2020	180	56,233	19,500,000	법원경매	-
						2025.06.12	
ㄷ	봉고Ⅲ 1톤 EV	2021	180	28,183	22,000,000	법원경매	-
						2025.06.12	

2. 유사 차량의 방매가격수준(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 등)

[출처 : 차차차, 엔카 등]

기호	차명	연식	주행거리 (km)	지역	색상	방매가격 (원)	비고
D	봉고Ⅲ 1톤 EV	2021	19,180	경기	흰색	22,490,000	-
E	봉고Ⅲ 1톤 EV	2021	45,738	경기	흰색	19,300,000	-
F	봉고Ⅲ 1톤 EV	2021	91,150	경기	흰색	16,6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유사차량 가격수준 검토

본건 자동차의 동종 · 유사차량의 중고차 가격수준은 동일한 연식이라도 관리상태, 주행거리, 옵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보통의 경우 가격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 번호	차명	가격수준(원)	비고
2	봉고Ⅲ 1톤 EV	15,000,000원 ~ 23,000,000원	-

4. 감정평가액 결정

동종 · 유사차량의 감정평가사례, 방매가격수준 및 유사 차량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고, 차종, 형식, 연식, 주행거리,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차명	연식	배기량 (cc)	주행거리 (km)	평가금액 (원)	비고
2	봉고Ⅲ 1톤 EV	2021	180	47,167	20,000,000	-

자동차(건설기계) 감정평가명세서표

일련 번호	차 명 (차 종)	등록 번호	차체	연식/형식	적재량(정원)	차대번호	제 작 자	감정평가액	산 근 출 거
			기관	출 력	연료/기통수	원동기형식	제작일자		
2	봉고Ⅲ 1통 EV	82라 8926	-	2,021	1톤	KNCSJZ7NFMK 012074	현대	20,000,000	비준가액
			-	180cc	전기	EM14	2021.08.10		
합 계								₩20,000,000 .-	
				이	하	여	백		

자동차 감정평가요항표

(1) 년식 및 주행거리

(2) 색상

(3) 관리상태

(4) 사용연료

(5) 유효검사기간

(6) 기타(옵션등)

(1) 년식 및 주행거리

연식 : 2021

주행거리 : 기준시점 당시 계기판 상 주행거리는 47,167km

(2) 색상

흰색임.

(3) 관리상태

본건 자동차의 관리상태는 보통임.

(4) 사용연료

전기임.

(5) 유효검사기간

자동차 등록원부(갑) 상 2024-08-19 ~ 2026-08-18 임.

(6) 기타(옵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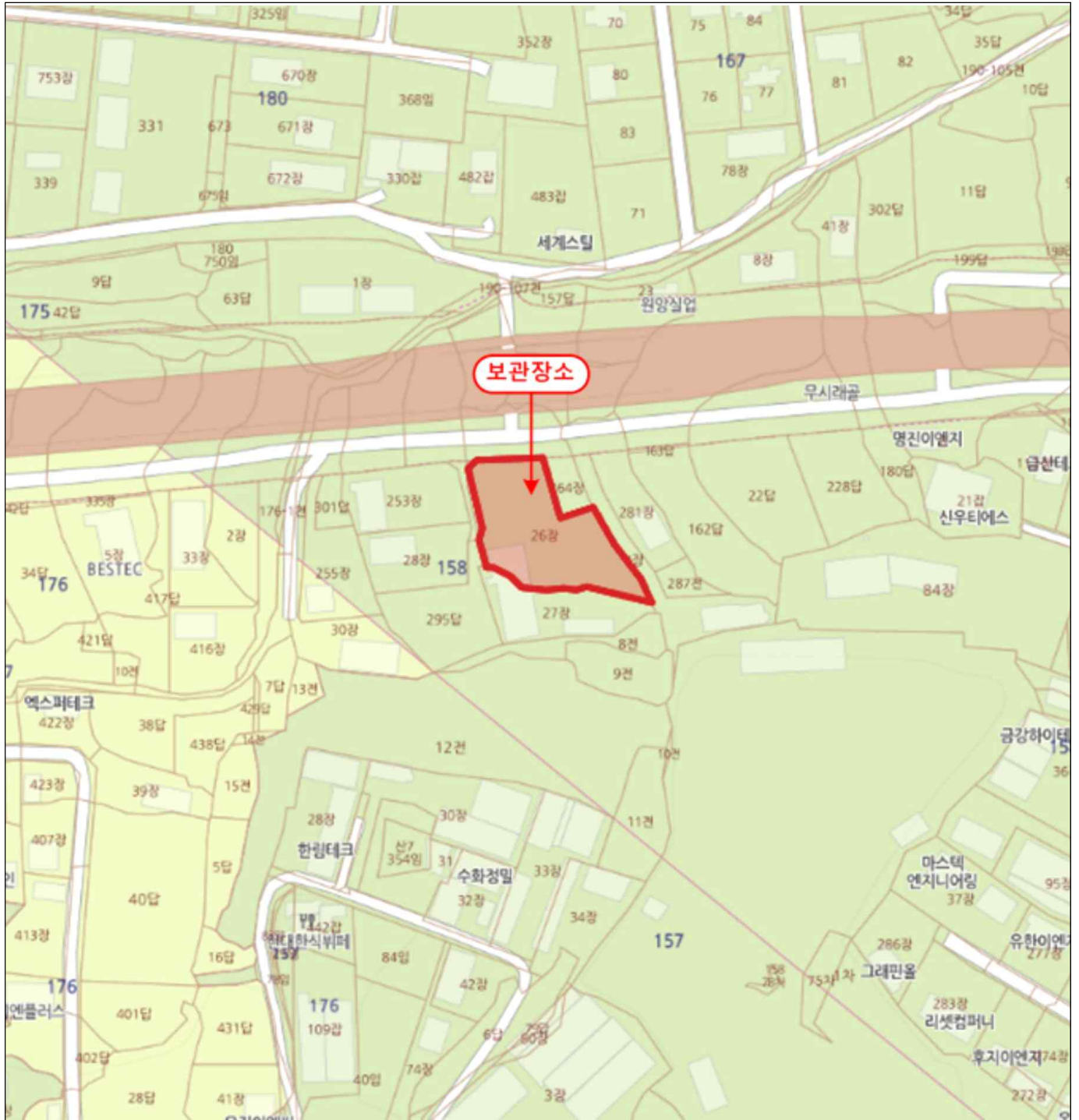
- ABS제동잠금장치, 주차후방센서 등임.

- 본건 자동차 정면에 번호판이 없으나, 후면 번호판 및 차대번호 등을 통해 차량을 확인함.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8-26 우리물류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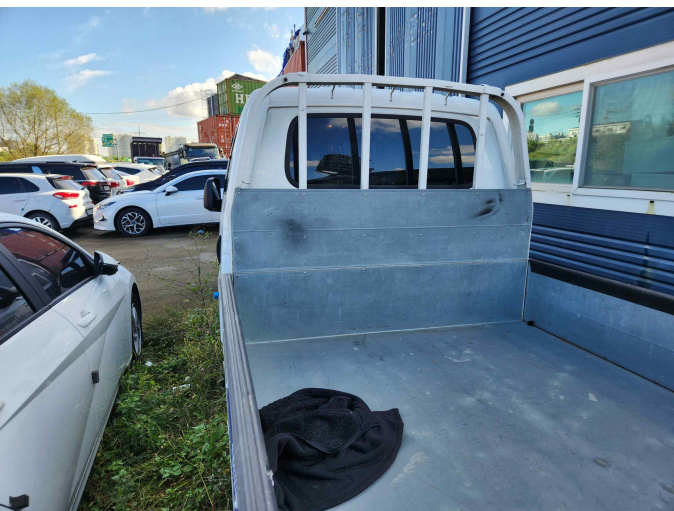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정면



측면



후면

사 진 용 지



계기판



차대번호



번호판

회 보 서

우)14348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씨동 3층 314호

TEL. 02-6299-7444
FAX. 0505-182-4448

문서번호 : GD13-250925-3005

시행일자 : 2025-10-16

수 신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주현

참 조 : 경매7계

제 목 : 감 정 의 퇴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주)감정평가법인 감동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9-25자 귀 제 『2025타경55091』호로 의뢰하신 『주식회사 발켄모빌리티 소유물건 (2025타경55091)』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장 노태중

수수료 청구서

문서번호 : GD13-250925-3005

수신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홍주현 귀하

제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9.25 자 귀 제 『 2025타경55091 』호로
의뢰하신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8-26 우리물류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290,000	
실비	여비	128,4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3,000
	기타 실비	6,000
비	소계	137,4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427,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42,700	
합계	469,7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469,700	

붙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금처 ※

국민은행 구의동 : 051001-04-254020(예금주:(주)감정평가법인감동 경기지역본부)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장 노태중

TEL. 02-6299-7444

FAX. 0505-182-4448